

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6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0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3. 10. 23. **원안가결**)

2. 제안요지설명(이태복 교통지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6. 화성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0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3. 10. 23. **원안가결**)

2. 제안요지설명(이관열 도시재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 연장(안 제27조제5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임채덕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6. 임채덕 의원 외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0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3. 10. 23. **원안가결**)

2. 제안요지설명(임채덕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 등을 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, 제7조)
-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도지사예 예산지원 요청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내용으로는 위험수목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생활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및 지원사업의 범위와 생활위험 수목 처리반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도 지사에 예산 지원 요청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일부 수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,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·운영을 통하여 경기도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,
- 실태조사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 결정 방법과 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의무 설치된 수목 등에 대한 지원 제외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이 외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6. 화성시장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0.
다. 상 정 일 자 :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3. 10. 23. **의견채택**)

2. 제안요지설명(최병주 공원조성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화성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, 관리, 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-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간적 범위 : 기준연도 - 2021년, 목표연도 - 2035년
- 공간적 범위 :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전역(1,126.13km²)

구 분	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(안)
미래상	• 걷는 곳 마다 도심 정원으로 변화하는, 녹색도시 화성
계획지표	• 인구 : 119.6만명 • 도시공원 : 19,029,422m ² • 1인당 도시공원 면적 : 15.9m ² /인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화성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, 관리, 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범위, 미래상과 목표, 공원녹지 주요 지표, 주요 사업 및 부문별 계획, 공원녹지 관리계획, 공원녹지 이용 및 참여계획 등이 있습니다.
-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타 지자체와 도시공원 면적 및 사업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을 때, 도시공원 증가 면적은 월등히 높은 반면 투입되는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결과는 우리 시 공원녹지 확충의 많은 부분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, 택지개발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공원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권별 1인당 공원 면적을 산정하는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의견채택

- 가. 도시공간 최상위 계획인 화성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택지개발등 타기관에서 조성하는 공원계획시 수령, 수종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우리시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와 지속가능한 명품 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라.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우리시 각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특화 가로수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지역내 고목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바.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을 대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사.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절감 방안등 구체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. 금회 계획에 미 반영된 화성호 갈대숲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. 특화된 공원 계획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